기획재정부	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2. 15.(월) 11:00 배포 2025. 12. 14.(일) 16:00

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

-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
-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
- 정부·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

기획재정부는 **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**하고, 최근 국정감사·국회·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**정부자산 헐값매각** 및 매각과정의 **불투명성을 해소**하기 위한 **제도개선 방안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[정부자산 정책방향]

앞으로 정부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, **국가·지역 공동체, 미래세대 이익**을 **극대화**하는 **공공재**로 그 **역할을 재정립**합니다.

국민 모두의 자산인 정부자산의 내재가치를 제고하는 한편, **경제성장**과 **사회적 과제**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 아울러, 정부자산 매각 시 **국민적 합의를 존중**하고, 매각 과정 전반을 **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**할 계획입니다.

[세부 제도개선 방안]

첫째, 정부자산 **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**하겠습니다. 우선, 각 부처(기관)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**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**하여,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 **300억원 이상** 매각건은 **국무회의**를 거쳐 **국회 상임위 사전보고**를 의무화 하고, **50억원 이상**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**매각전문 심사기구**의 **보고·의결**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.

다만,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**시장대응적 자산 매각**, **기관 고유업무 수행**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(예 : KIC 자산운용 등) 등은 **보고대상에서 제외**하고,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(예: 손실보상,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)에는 **사후보고로 대체**함으로써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

둘째, **헐값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** 하겠습니다. 우선 감정평가액 대비 **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**하고, **할인매각**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**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** 계획입니다.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**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**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**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** 하겠습니다. 아울러,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**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**해 나가겠습니다.

셋째, **공공기관의 민영화**와 관련해서는 **국회에서의 논의**를 충분히 거친 후 **추진**합니다. 정부·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**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**를 신설하여 **국회**가 사전에 **민영화에 대해 심도있게**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넷째, **매각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**합니다. 우선, **정부자산**을 **매각**하도록 **의사결정한 경우, 입찰정보**를 즉시 **웹사이트(온비드)에 공개**합니다.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,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**투명하게 공개**함으로써 국민의 **알 권리를 보장**하고 **사후 외부통제**도 강화합니다. 또한,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**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,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** 하겠습니다.

다섯째, 앞으로는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**지방정부·他 공공기관의 행정목적** 등 **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**하도록 **의무화**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,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서 **전략적 신산업 지원**, **사회적경제 조직 지원**, 공공주택 공급 등 **적극적인 가치를 창출**하겠습니다.

[향후일정]

「국유재산법」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**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**은 **'26년 상반기**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,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**즉시 이행***할 계획입니다.

* (예시)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건 국회 사전보고,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

담당 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김장훈 (044-215-5150) 윤홍기 (yhk0306@korea.kr)
	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이민호 (044-215-5630) 김윤찬 (yoonchan1991@korea.kr)